

서울특별시 시민청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704
----------	------

2021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21년 8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라. 상정결과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가. 제안이유

- ‘시민청’은 서울시민 모두가 소통하고 참여하는 대표 소통공간으로 시청사 내에 위치하여 높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됨
- 또한, 전시·공연·행사 등을 위한 시민편의시설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안정적 운영이 동시에 요구되어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고,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시민청 사무

(2) 시설 개요

- 시설명 : 시민청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내
- 시설규모 : 총 8,150.65㎡(지하 1·2·4층)

지하1층(5,401.02㎡)	지하2층(2,269.75㎡)	지하4층(479.88㎡)
활짝라운지, 시민청갤러리 등 12개 공간	태평홀, 바스락홀 등 6개 공간	수장고

(3)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8조(운영·관리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12. 11. 1.~2015. 10.31.(3년, (재)서울문화재단)
- 2차 : 2015. 11. 1.~2018. 12.31.(3년2월, (재)서울문화재단)
- 3차 : 2019. 1. 1.~2021. 12.31.(3년, (재)서울문화재단)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민청은 시청사 내에 위치한 공공성을 지닌 시민편의시설이라는 특수성 지니고 있어 전시·공연·행사 등 공공성을 띤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시설관리 등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함은 물론 공공의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겸비한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행정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권역별 시민청 확산 시 '시민청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간의 운영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재)서울문화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함

(4)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2022. 1. 1.~2023. 12. 31.)

○ 위탁업무

- 시민청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사업 전반
- 시민참여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시행
- 시민참여 방안 및 안전대책 수립·시행, 사업시행 평가

○ 소요예산 : 2,127백만원('21년 예산 기준)

○ 수탁기관 : (재)서울문화재단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5)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2) 예산조치 : '22년도 예산편성 필요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 시민청 사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보고서(별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2013년 1월 12일 서울시청 청사 지하층에 개관한 '시민청'의 사무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음.

나. 시민청 현황

- 시민청(市民廳)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공간을 가리키며 현재 서울시청 시민청과 삼각산 시민청이 운영 중임.

시청 시민청은 2013년 1월 12일 개관하여 하루 평균 5,526명¹⁾이 방문하는 서울시 대표 시민소통·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이 토론·전시·공연·교육·놀이 등의 활동을 통해 열림과 유동적 공간으로 계획되어 조성되었음.

〈 시청 시민청 주요 서비스 내용 〉

주요 서비스명	특징
시민청 안내센터 & 서울시관광안내센터	시민청 시설소개와 프로그램 안내, 참여 신청 안내가 가능한 종합안내 센터로, 서울시 여행정보, 공연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관광안내 센터
시민청갤러리	회화 및 설치, 만화, 리사이클 작품 등 매월 1~2회 다양한 주제의 특별 기획전시와 대관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
담벼락미디어	여섯 면의 미디어 월(Media Wall, 담벼락 영상)과 함께 도란도란 카페의 테이블과 어울려 시민들의 자유스러운 표현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
활짝라운지	시민을 위한 휴식과 만남의 공간으로 활력 콘서트, 토요일은 청이 좋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열린 공간
시민플라자	한마음 살림장, 아이마켓서울유, 대관 전시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민청에서 가장 넓은 다목적 공간
서울책방	서울 관련 도서와 서울시가 만든 책자를 판매, 서울 동부서점협동조합이 관리 및 운영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양질의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고, 공정무역에 대해 배우며 체험하는 커뮤니티 공간
태평홀	구청사의 태평홀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으로 시민청 결혼식, 시민대학 등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약 100명 수용
바스락홀	약 100명이 참석할 수 있는 규모의 미니 공연장으로, 분기별로 '바스락 콘서트' 개최
동그라미방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소규모 시민참여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개폐가 가능한 무빙월(Moving wall)을 가진 원형 공간. 40명 수용
워크숍룸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등 참여형 프로그램에 특화된 공간
시민아지트	시민모임 지원사업 <다이음> 소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천장면이 지하 1층으로 열려있는 다목적 홀

시청 시민청은 개관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1) 2013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기준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연간 방문자수는 계속적으로 하락 중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7월
일평균(명)	4,631	5,240	5,444	6,173	5,701	5,655	5,635	2,108	345
연인원(명)	1,405,289	1,685,140	1,905,363	2,240,956	2,058,121	2,041,550	2,039,818	242,465	58,929

서울문화재단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 중인데²⁾, 이 외에도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지구마을사회적협동조합), 스마트도시담당관(스마트도시전시관), 서울역사박물관(군기시유적전시실), 서울산업진흥원(아이마켓서울유) 등이 시민청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물 중 일부는 서울시 총무과³⁾에서 담당하고 있음.

- 2021년 시청 시민청의 민간위탁비는 총 21억 2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14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있음.

〈 시청 시민청 운영 개요 〉

- **운영시간** : 09시~21시 (단, 동절기(11월~익년2월)의 경우 20시까지)
 ※ 휴관일 : 1월 1일, 설·추석 당일,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안전점검의 날, '20년부터 적용)
- **운영방법** : 민간위탁((재)서울문화재단, '12.11.1~'21.12.31)
- **운영비** : 2,127백만원(운영비 910, 사업비 731, 인건비 486, '21년 기준)
- **운영인력** : 총 14명(정규직 5, 기간제계약직 9)

구분 인원	총괄(1)	프로그램운영		홍보	대관	일반운영
	팀장	문화예술	사회활동	홍보마케팅	대관·시설관리	예산·인력
14	1	4	4	1	3	1

※ 市 지원(뉴딜 및 공공근로) 및 용역 인력 : 총 29명

다. 시민청 운영방식 논의사항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시청 시민청의 민간위탁을 시의회 동의받기 이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사무선정 및 운영상황을 평가하였는데, 종합성과평가 결과 86.47점으로 재계약요건을 충족⁴⁾하였으며

2) 서울문화재단의 시청 시민청 민간위탁 기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임.

3) 시청 시민청은 시청 청사 내에 있으므로 시설물에 대한 총괄은 서울시 총무과 담당임.

최종적으로는 ‘적정’ 심의 의결되었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는 사업인프라, 사업활동으로 구분되는 서울시 민간위탁의 **공통사무 평가**와 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만족도 제고노력 등 각각의 민간위탁에 대한 **개별사무 평가**로 구분하며,

시청 시민청 종합성과평가 결과('21.5.6.)는

공통사무의 경우 인력 운용의 적정성과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부문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는데, ① 공간대비 적은 인력투입과 ② 투입된 인력의 행정업무과중이 높은 점, ③ 높은 예산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성과목표와의 연계체계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 특히 행정업무의 지나친 과중은 대관 및 시설관리업무에만 인력이 투입되어 시민청 본연의 사업 목적(시민소통·문화공간 운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개별사무의 경우 사업 성과지표의 적정성,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① 각종 조사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② ‘시민청’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인지도가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음.

특히 시민들에게 ‘시민청’이 어떤 공간으로 인지되는지 여부는 시민청이 **시민소통과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목적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문화와 예술’ 중흥에 목적을 갖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다보니 문화부문의 정체성은 부각되나 시민소통 부문의 전문성은 부족해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⁵⁾.

4)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요건 충족.

5)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시민청의 운영 현황이 대관과 문화예술 전사·행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

- 서울시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기존 시청 시민청과 삼각산 시민청 외 4개의 권역별 시민청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4월 서울연구원을 통해 ‘권역별 시민청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음.

〈 권역별 시민청 조성 개요 〉

구 분	주 소	운영기간	비 고
시청 시민청	중구 태평로1가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지하층)	2013.1~현재	서울문화재단
삼각산 시민청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솔밭공원역 (솔밭공원역사 2개동)	2018.4~현재	(주)인사이트모션, 부지 재선정 중
동북권 시민청	성북구 하월곡동 226-4 (하월곡동 거주자 우선주차장)	타당성 조사 완료	
동남권 시민청	송파구 문정동 350일대 (문정도시개발지구내 문정컬처밸리)	타당성 조사 완료	
서남권 시민청1	강서구 마곡동 734-6 (마곡도시개발지구내 편익시설부지)	타당성 조사 완료	
서남권 시민청2	금천구 독산동 897-2 (‘모두의 학교’ 운동장 부지)	타당성 조사 완료	

해당 연구용역에서는 현재 시민청의 운영이 ①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약 94%), ② 시민청 확산운영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권역별 시민청 조성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 시민청 활용 및 운영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성과 주도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 기존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사회적가치 지향 사무’인 시민청 운영의 성과평가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원의 생활문화센터,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시 생활문화센터·창작공간, 자치구별 문화센터 등 복합문화공간과의 차별점이 없어 ‘시민청’만의 시민소통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음.

-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이러한 지적들을 감안⁶⁾하여 시청 시민청의 공간·운영 혁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조직담당관의 학술용역비 (1억원 예정)를 활용해 2021년 9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는 권역별 시민청을 포함한 전체 시민청의 전반적인 사무, 목적 및 내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물론 시청 시민청 공간·운영 혁신 기본계획 수립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지적, 권역별 시민청 타당성 조사 결과,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통해 추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부터 사실상 시민청의 정상운영이 어려웠고 서울문화재단의 시청 시민청 민간위탁 계약만료 ('21.12.31.)가 예견되었으므로 해당 연구용역이 본 동의안이 제출되기 전 준공되었다면 현재 시민청의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할 뿐 아니라 재정적·행정적 소요⁷⁾도 적었을 것임.

라. 소결

- 시청 시민청의 민간위탁 사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서울 문화재단 재계약 '적정' 평가가 있었으므로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여건은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시민소통기획관은 현재 시민청이 ① 코로나19 이후 제한적 운영으로 인한 방문객 급감 및 공간 매력도 저하, ② 노후시설, 사회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기능·공간 구성, ③ 시민참여 부족, 특화 프로그램 부재로 인한 시민 인지도 저하로 새로운 혁신 기본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7) 시민소통기획관은 시청 시민청을 향후 2년간(2022.1.1.~2023.12.31.) 기존처럼 서울문화재단에 민간위탁하고, 기본계획 재수립 후 운영방안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시민청 민간위탁금은 연간 21억 2천7백만원(2021년 기준)임.

다만 그동안의 여러 평가에 의해 시민청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변경이 요구된 바, 향후 시청 시민청의 기본계획 재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현재의 운영 방식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현재 계획 중인 권역별 시민청 조성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영향은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시민소통기획관은 기존의 복합문화공간과는 차별화된 시민청 운영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으며,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민청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704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민청’은 서울시민 모두가 소통하고 참여하는 대표 소통공간으로 시청사 내에 위치하여 높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됨
- 나. 또한, 전시·공연·행사 등을 위한 시민편의시설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안정적 운영이 동시에 요구되어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고,
-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시민청 사무
- 나. 시설 개요

- 시설명 : 시민청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내
- 시설규모 : 총 8,150.65㎡(지하 1·2·4층)

지하1층(5,401.02㎡)	지하2층(2,269.75㎡)	지하4층(479.88㎡)
활짝라운지, 시민청갤러리 등 12개 공간	태평홀, 바스락홀 등 6개 공간	수장고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8조(운영·관리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의 대행)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12. 11. 1.~2015. 10.31.(3년, (재)서울문화재단)
- 2차 : 2015. 11. 1.~2018. 12.31.(3년2월, (재)서울문화재단)
- 3차 : 2019. 1. 1.~2021. 12.31.(3년, (재)서울문화재단)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민청은 시청사 내에 위치한 공공성을 지닌 시민편의시설이라는 특수성 지니고 있어 전시·공연·행사 등 공공성을 띤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시설관리 등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함은 물론 공공의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겸비한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행정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권역별 시민청 확산 시 '시민청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간의 운영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재)서울문화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함

라.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2022. 1. 1.~2023. 12. 31.)
- 위탁업무
 - 시민청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사업 전반
 - 시민참여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시행
 - 시민참여 방안 및 안전대책 수립·시행, 사업시행 평가
- 소요예산 : 2,127백만원('21년 예산 기준)
- 수탁기관 : (재)서울문화재단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8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시민청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시 또는 자치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시 또는 자치구가 부담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19조의 5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나. 예산조치 : '22년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시민청 사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보고서(별첨)

※ 작성자 : 시민소통담당관 현장소통팀 황희성 (☎ 2133-6418)